

고의성 판단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 범죄의 전형성 및 심각성의 역할*

최 승 혁†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확증편향, 범죄의 전형성, 범죄의 심각성, 도덕적 특성, 고의성 판단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731).

† 교신저자: 최승혁,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연구교수,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화도관 608호, E-mail: dawnseye@naver.com

“저 높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거봐, 내 말이 맞지?”

고의성 판단 과정에 확증편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초기에 형성된 가설이나 신념들이 부지불식간에 이후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찾게 하고, 해석하게 하며, 왜곡시켜 초기 가설 및 신념들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일상에 만연해 있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Nickerson, 1998). 비록, 고의성 판단과 관련하여 확증편향을 밝힌 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확증편향은 Wason(1960)에 의해 발견된 이래 일반인들은 물론 수사관, 검사, 변호사, 판사 등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형사사법 체계 종사자들에게도 만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확증편향은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김상준, 2013; 김청택, 최인철, 2010; Canter & Youngs, 2009; Dror, 2013; Findley & Scott, 2006; Kassin, Dror, & Kukucka, 2013; Nickerson, 1998).

특히, 김상준(2013)은 한국의 형사 재판에서 수사기관 및 1심 법원이 터널비전에 빠져 유·무죄 판단의 오류를 범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있다. 터널비전(tunnel vision)이란, 초기의 가설이나 심증으로 인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져 이후 제공되는 증거를 간과하거나 왜곡하여 오판을 일으키게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Findley & Scott, 2006). 김상준(2013)에 따르면 이러한 터널비전은 확증편향을 기본으로 하여 후견편향, 결과편향 등 다양한 인지적 편향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유죄 오판 사건들의 공통된 원인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재판 제도가 규문주의 시스템에서 당사자주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터널비전으로 인한 오판 가능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기존 법관이 판결의 주체가 되는 규문주의 체계에서는 재판에서 누가 이기는가보다는 재판의 중립성과 실제적 진실 추구에 집중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재판 당사자들(검사측 대 변호인측)이 배심원을 설득하는 당사자주의 체계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승소를 위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는 부각시키고 불리한 증거는 간과하거나 왜곡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각 사법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확증편향의 위험은 국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오판 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일단 용의자를 확인하고 나면, 그가 유죄라는 증거들에 집중하여 더 탐색하고 그가 무죄라는 증거들은 간과하며, 그가 유죄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더 강압적인 신문을 실시하기도 한다(Hill, Memon, & McGeorge, 2008; Johnson, Bush, & Mitchell, 1998; Kassin, Goldstein, & Savitsky, 2003; O'Brien, 2009). 나아가 이러한 확증편향은 수사관은 물론, 배심원 및 판사가 행하는 증거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증명력이 애매한 증거들을 초기의 가설에 일치되게 해석하며 왜곡하기도 한다(Hasel & Kassin, 2009; Halverson, Hallahan, Hart, & Rosenthal, 1997; Lange, Thomas, Dana, & Dawes, 2011; van den Eeden, de Poot, & van Koppen, 2019). 예를 들어, van den Eeden 등(2019)은 범죄현장 감식 수사관과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확증편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사전 기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자살사건 또는 살인사건을 암시하는 맥락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자살이나 살인사건 중 그 어느 쪽도 확실히 지지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애매한 범죄현장 증거들을 제시하고 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사관과 일반인들은 유사하게 사전에 제공된 맥락 정보와 관련된 방향으로 증거들을 수집하고 해석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kucka와 Kassir(2014) 또한 애매한 증거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은 그러한 증거들이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느냐에 따라 판단자들의 지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들이 형성되게 되고, 이에 따라 확증 편향이 발생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확증 편향으로 인한 오판은 현장감식(예, van den Eeden et al., 2019)은 물론, 필적감정(예, Kukucka & Kassir, 2014), 지문감식(예, Dror, Charlton, & Peron 2006), 심지어 증거의 황금 기준(gold standard)으로 인정받고 있는 DNA 감식(예, Dror & Hampikian, 2011)과 같은 과학수사의 맥락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상준(2013)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DNA 감식 결과 피고인의 DNA가 범인의 DNA와 다르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여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1950)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사법 판단, 특히 유·무죄 판단의 영역에서 만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는 확증편향은, 유·무죄 판단의 기반이 되는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확증편향은 고의성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범죄사건의 심각성과 전형성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확증편향이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일반적으로, 대인간 폭력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는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가). 이로부터 수사관들은 행위의 고의성을 포함하여 용의자에 대한 초기 인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목격자, 피해자, 용의자, 및 사건 당사자들의 주변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이나 과거력, 평판 등을 파악하면서 사건 용의자에 대한 초기 인상은 보다 견고하게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러한 초기 인상에 맞게 해석 및 왜곡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건 당사자들과 관련된 정보들은 범죄사건의 전형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승혁과 허태균(2020a; 2020b)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들과 관련된 신상 정보들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추론 근거로 사용되고, 나쁜 사람들이 만나 싸우는 상황은 전형적인 폭력 범죄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범죄사건의 전형성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 요인이 기존의 대표적인 고의성 판단 모델들에서 제안하는 요인들[행위자의 욕망 및 예견가능성(Cushman, 2008; Guglielmo & Malle, 2010; Malle & Knobe, 1997; Monroe & Malle, 2019), 행위자에 대한 비난(Alicke, 2000; 2008; Alicke

& Rose, 2012; Nadelhoffer, 2006; Rogers et al., 2019), 행위 결과의 나쁨 정도(Cova, Lantian, & Boudesseul, 2016; Knobe, 2003; 2010; Ngo et al., 2015; Zucchelli et al., 2019)]보다 고의성 판단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들인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고정관념적으로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죄 상황에서는 사건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범죄사건의 전형성과 확증편향은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전형적인 범죄상황이라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해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더 편향적으로 찾고 애매모호한 정보들은 그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을 더 강하게 추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사건의 심각성은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 평가(즉, 행위자에 대한 비난, 행위 결과의 나쁨 정도)를 통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범죄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람들은 그 사건의 결과가 더욱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일으킨 행위자를 더욱 비난할 것이며,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Kneer & Bourgeois-Gironde, 2017). 그러나 최승혁과 허태균(2020a)이 고의성 판단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평가 요인과 여타의 대표적 고의성 요인들

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도덕적 평가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Sripada(2012)와 Sripada & Konrath(2011)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범죄사건의 심각성이 직접적으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최승혁과 허태균(2020b)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사건의 심각성이 간접적으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즉, 이들의 연구 1(중상해 사건)과 2(사망 사건)에서, 범죄사건의 전형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또한 가장 높게 판단한 결과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덜 전형적인 범죄사건인 경우에는 연구 1과 2의 고의성 판단 결과가 미묘하게 달리 나타났는데, 두 연구의 시나리오에서 사건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중상해 대 사망)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고의성 판단 차이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일부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는 비록,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간접적으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죄사건의 심각성과 전형성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두 범죄사건 관련 변인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 판단 과정에 확증편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방 법

참가자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040548-KU-IRB-18-27-A-1). IRB 승인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주)엠브레인의 패널들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본 연구 목적과 결과 활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 받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연구의 자세한 목적이 담긴 사후설명문을 제공 받았고, 자료 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참가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을 제공받았다. 모집된 연구 참가자는 총 371명으로, 남성 182명, 여성 189명이었고, 연령은 평균 39.13세(표준편차 10.72, 범위 20세~59세)이었다. 본 연구는 2(범죄의 심각성: 저/고) × 2(범죄의 전형성: 저/고) × 2(확증편향: 저/고) 피험자 간 설계로 수행되었다.

측정 및 절차

참가자들은 먼저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을 조작한 네 가지 시나리오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범죄 시나리오는 최승혁과 허태균(2020b)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은 두 행위 주체가 몸싸움을 하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심각성 低 조건)과 사망한 사건(심각성 高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범죄의 전형성은 최승혁과 허태균(2020b)의 연구 2에서 범죄사건의 전형성이 높게 측정된 조건(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조건)과 낮게 측정

된 조건(가해자는 좋은 특성을, 피해자는 나쁜 특성을 가진 조건)을 인용하여 조작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중상해 사건 및 사망 사건의 시나리오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조작한 부분이고, 밑줄 친 부분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부분이다.

중상해 사건 시나리오

본 사건은 2017년 12월 저녁 11시경, 서울 외곽의 ** 호프집 주차장 계단 쪽에서 김모씨와 이모씨가 싸움을 하던 도중 이모씨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오른쪽 무릎 뼈와 오른쪽 갈비뼈2대가 부러지는 등 약 3개월간 입원치료와 이후 약 1년간 통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모씨가 이모씨를 의도적으로 계단 밑으로 밀어 다치게 한 것인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인지에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김모씨는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설립한 모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마친 후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없는 말로 인간질시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김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이모씨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떡살을 잡은 이모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모씨는 주로 노인들을 속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으로 걸으려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나, 매우 이기적이고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이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김모씨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김모씨가 자신을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사망 사건 시나리오

본 사건은 2017년 12월 저녁 11시경, 서울 외곽의 ** 호프집 주차장 계단 쪽에서 김모씨와 이모씨가 싸움을 하던 도중 이모씨가 병 조각에 목을 찢려 경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모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목을 찢려 살해한 것인지, 실수로 죽게 한 것인지에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김모씨는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설립한 모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마친 후(시장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없는 말로 이간질시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김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이모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모씨가 먼저 병을 깨 들고 자신을 위협하여 자신도 방어차원에서 병을 깨 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모씨가 병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자신은 급하게 뒷걸음치며 도망가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모씨 또한 자기 위로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병 조각에 찢려 죽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모씨가 단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어차원에서 병을 깨 들었을 뿐 절대 일부러 이모씨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이모씨(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모씨는 주로 노인들을 속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으로 걸으려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나, 매우 이기적이고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검찰에 의하면, 김모씨와 이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병을 깨 들고 상대를 위협하였다 또한, 검찰은 깨져서 날카로워진 병 조각은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흉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모씨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모씨를 죽이려 마음 먹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모씨를 의도적으로 찔러 죽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김모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더 많이 선택한 경우에 확증편향 高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반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참가자라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지지하는 증거보다 더 많이 선택한 경우에 확증편향 高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증거는 고의성을 확실히 지지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어떤 유형의 증거를 선택하든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증거들의 제시순서는 상쇄균형화(counterbalancing) 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증거들의 내용이다.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범죄의 심각성 문항(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0: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0: 매우 극도로 심각하다)), 범죄의 전형성 문항(위 사건의 두 당사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0% ~ 100%)), 그리고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사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피해자를 죽게 한)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1: 의도적이었다, 2: 의도적이지 않았다)]에 응답하였다.

1차 고의성 여부 판단에 뒤이어, 참가자들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의성을 지지하는 또는 부정하는 증거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였는데, 이 선택 결과를 바탕으로 확증편향 저/고 집단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1차 고의성 여부 판단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제시되는 증거들 중 고의성을 지지하는 증거를 부정하는 증거

증거 1: ** 호프집 주차장 CCTV 녹화 내용

경찰은 사건 장소인 ** 호프집 뒷문에서 주차장 원편 입구 쪽으로 설치된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CCTV 녹화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처음에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주차장으로 나와 서로 샷대질을 하며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떡살을 움켜잡았고 이모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내 김모씨도 맞받아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CCTV 사각지대인 주차장 오른쪽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호프집 종업원이 나왔다가 이내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차량이 한 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당시 주차장 오른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하려 했지만 그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거 2: 목격자 증언

(밑줄 친 부분은 중상해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밑줄 친 부분 중 팔호 안의 부분은 사망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사건의 목격자인 ** 호프집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와 이모씨 두 사람은 모두 일행 없이 혼자 술집에 들어와 카운터 앞 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두 사람이 호프집에 들어온 지는 채 1시간도 안됐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모씨와 이모씨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호프집 안에서도 들릴 만큼 밖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간 종업원은 주차장 오른쪽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있는 쪽에서 두 사람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것을 보았고 (깨진 병을 겨누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고), 이에 놀라 급하게 카운터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증거 3: 사건 발생 후 김모씨의 행동

** 호프집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밖에 나가보니 김모씨는 계단 위에서 아래쪽을 그냥 바라만보고 있었고 자신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모씨가 계단 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모씨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이모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모씨는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멍

하니 서 있었던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증거 4: 사건 당사자 김모씨와 이모씨의 관계

경찰이 사건 당사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김모씨와 이모씨는 사건 발생장소인 ** 호프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주택가에 인접해 살고 있었다. 사건 당사자들 간 관계에 대해 주변 이웃들은 김모씨와 이모씨가 약 6개월 전 비슷한 시기에 이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서로 왕래는 없는 것 같았고 두 달 전쯤 김모씨와 이모씨가 주차문제로 몇 차례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에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본 이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거 5: 사건 가해자 김모씨의 진술

(밑줄 친 부분은 중상해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밑줄 친 부분 중 팔호 안의 부분은 사망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김모씨는 이모씨를 다치게 할(죽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몸싸움을 하던 도중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모씨가 중상을 입게 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김모씨의 진술은 바뀌었는데 즉, 이모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서 이모씨를 계단 밑으로 밀어 다치게 한 것이라고(이모씨에게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죽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후 법정 진술

에서 김모씨는 처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이 진실이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도 신문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게 잘 못 진술하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의성을 지지하는 또는 부정하는 증거에 대한 선택과 열람을 한 후, 참가자들은 최종적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피해자를 죽게 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 전적으로 동의한다)] 및 고의성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피해자를 죽게 한)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1: 의도적이었다, 2: 의도적이지 않았다)]에 응답하였다.

결 과

조작 점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작점검을 위해, ‘중상해’ 조건과 ‘사망’ 조건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은 사망 사건($M = 8.30, SD = 1.72$)을 중상해 사건($M = 6.52, SD = 1.56$)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응답하였다($t_{(369)} = 10.463, p < .001, Cohen's d = 1.09$).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범죄사건의 전형성에 대한 조작점검을 위해, 전형성을 낮게 또는 높게 조작한 조

건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은 전형성을 높게 조작한 조건($M = 64.23, SD = 23.67$)을 낮게 조작한 조건($M = 54.90, SD = 21.71$)보다 더 전형적인 범죄 사건이라고 응답하였다($t_{(369)} = 3.957, p < .001, Cohen's d = .41$). 따라서 범죄사건의 전형성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확증 편향

증거목록의 선택에 있어서 확증편향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목록 선택 전에 이루어진 고의성 여부 판단을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과 부합하는 또는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선택한 결과를 대응 *t*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총 다섯 번의 선택 회기 중, 자신의 초기 고의성 판단과 부합하는 증거를 선택한 횟수($M = 2.95, SD = 1.37$)가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선택한 횟수($M = 2.05, SD = 1.37$)보다 많았다. 이에 전반적으로 확증편향의 발생이 확인되었다($t_{(370)} = 6.377, p < .001, Cohen's d = .66$).

본 연구는 확증편향이 범죄 사건 관련 변인들(심각성과 전형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있다. 확증편향의 영향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초기 고의성 여부 판단과 부합하는 증거를 더 많이 선택한 사람들을 확증편향 高 집단($n = 232$)으로, 자신의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더 많이 선택한 사람들을 확증편향 低 집단($n = 139$)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 간 확증편향의 수준¹⁾ 차이

1) 확증편향의 값은 자신의 초기 고의성 판단과 부합하는 증거를 선택한 횟수에서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선택한 횟수를 뺀 값으로 설정하였다.

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확증편향 高 집단은 평균 2.61($SD = 1.74$), 低 집단은 평균 -1.94($SD = 1.45$)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확증편향 차이가 나타났다($t_{(369)} = 25.916, p < .001, \text{Cohen's } d = 2.78$).

고의성 판단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에 따른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은 증거의 선택과 열람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에 앞서, 참가자의 성별이나 연령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의성 관련 변인들과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²⁾, 성별은 여타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은 확증편향($r = .135$), 고의성 정도($r = -.135$), 및 고의성 여부($r = -.160$)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상관없이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기에, 고의성 정도 및 고의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성별과 연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에 따른 고의성 판단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고의성 정도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에 따른 고의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삼원공변량분석(3-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성별(여=0, 남=1)과 연령은 공변량

2)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주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F_{(1, 361)} = .981, p = .323, \eta_p^2 = .003$), 범죄사건의 전형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발견되었다($F_{(1, 361)} = 11.032, p = .001, \eta_p^2 = .030$). 즉, 전형성을 높게 지각한 조건에서 낮게 지각한 조건에 비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한 것이었다. 또한, 확증편향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나타났다($F_{(1, 361)} = 7.031, p = .008, \eta_p^2 = .019$). 즉,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한 것이었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심각성과 전형성 간($F_{(1, 361)} = .165, p = .685, \eta_p^2 < .001$), 심각성과 확증편향 간($F_{(1, 361)} = .305, p = .581, \eta_p^2 = .001$),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F_{(1, 361)} = 2.147, p = .144, \eta_p^2 = .006$)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사건의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_{(1, 361)} = 5.910, p = .016, \eta_p^2 = .016$).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그림 1 참고), 범죄의 전형성이 낮은 사건에서는 확증편향이 높든지 낮든지 고의성 판단에 차이가 없었지만($F_{(1, 365)} = .023, p = .881, \eta_p^2 < .001$), 범죄 전형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이(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1, 365)} = 11.804, p = .001, \eta_p^2 = .031$).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본 분석에서는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이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 정도에 영

표 1.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에 따른 고의성 판단

| 심각성 | 저(중상해 사건) | | | | 고(사망 사건) | | | |
|---------------------|-----------|--------|--------|--------|----------|--------|--------|--------|
| | 저 | | 고 | | 저 | | 고 | |
| 전형성 | 저 | | 고 | | 저 | | 고 | |
| 확증편향 | 저 | 고 | 저 | 고 | 저 | 고 | 저 | 고 |
| 참가자(n) | 43 | 56 | 29 | 63 | 36 | 54 | 31 | 59 |
| 고의성 정도 ^a | 4.98 | 4.84 | 4.86 | 6.30 | 5.00 | 5.09 | 5.58 | 6.17 |
| M(SD) | (1.92) | (1.98) | (2.23) | (1.89) | (2.07) | (2.08) | (2.61) | (2.28) |
| 고의성 여부 ^b | 16 | 20 | 11 | 39 | 12 | 20 | 17 | 29 |
| n(%) | (37.2) | (35.7) | (37.9) | (61.9) | (33.3) | (37.0) | (54.8) | (49.2) |

주. a. 값이 클수록 고의성이 높음(0~10점 척도): 전형성 주효과 有(저<고), 확증편향 주효과 有(저<고),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有.

b. 고의성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비율: 전형성 주효과 有(저<고),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有,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삼원상호작용효과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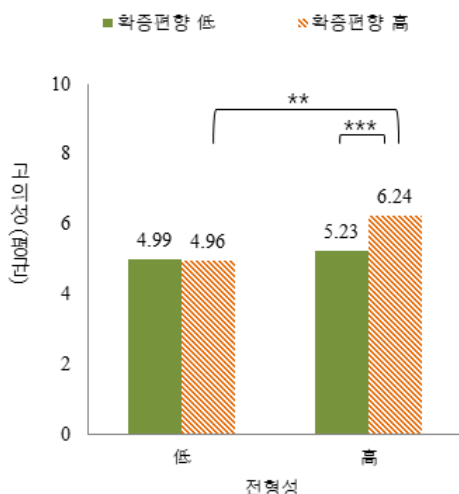


그림 1. 고의성 정도 판단에 대한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

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결국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판단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의 영향을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2 참고).

종속변인인 고의성 여부 판단 변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응답을 참조 집단으로 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1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0으로 더미 코딩(dummy coding)하였다. 또한, 예측변인인 범죄의 심각성, 전형성, 확증편향 변인은 각각 낮은 조건(참조 집단)을 0으로, 높은 조건을 1로 더미코딩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여=0, 남=1)과 연령은 회귀식의 처음 단계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그리고 1단계 모형에는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의 주효과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2단계 모형에는 예측변인들 간의 곱으로 생성한 상호작용효과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본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입력(enter)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의 주효과 변인들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X^2_{(5)} = 22.958, p < .001$), 예측변인들 간 상호작용효과 변인들

표 2.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

| 모형 | 변인 | B | S.E. | Wald | p | Exp(B) | ¹⁾ R ² | X ² |
|------------------|---------------|--------------|--------------|---------------|-------------|--------------|---------------------------------|------------------|
| 통계 모형 | (상수) | .920 | .414 | 4.940 | .026 | 2.510 | .026 | 9.634** |
| | 성별 | .070 | .212 | .108 | .743 | 1.072 | ~ | |
| | 연령 | -.031 | .010 | 9.313 | .002 | .970 | .034 | |
| 1 | (상수) | .536 | .449 | 1.427 | .232 | 1.709 | .060 ~ .080 | 22.958*** |
| | 성별 | .098 | .216 | .204 | .652 | 1.102 | | |
| | 연령 | -.034 | .010 | 10.868 | .001 | .967 | | |
| | (A)심각성 | -.076 | .216 | .123 | .726 | .927 | | |
| | (B)전형성 | .698 | .217 | 10.358 | .001 | 2.010 | | |
| (C)확증편향 | .312 | .228 | 1.886 | .170 | 1.367 | | | |
| 2 | (상수) | .807 | .524 | 2.369 | .124 | 2.241 | .074 ~ .099 | 28.421** |
| | 성별 | .127 | .218 | .340 | .560 | 1.136 | | |
| | 연령 | -.036 | .011 | 11.836 | .001 | .964 | | |
| | A | -.286 | .483 | .352 | .553 | .751 | | |
| | B | -.090 | .505 | .031 | .859 | .914 | | |
| | C | -.525 | .975 | .290 | .590 | .592 | | |
| | A * B | 1.062 | .724 | 2.152 | .142 | 2.892 | | |
| | A * C | .442 | .631 | .491 | .483 | 1.557 | | |
| | B * C | 1.286 | .641 | 4.025 | .045 | 3.620 | | |
| A * B * C | -1.770 | .914 | 3.751 | .053 | .170 | | | |

주. 1) Cox & Snell R² ~ Nagelkerke R².

p < .01, *p < .001.

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X²₍₉₎ = 28.421, p = .001). 2단계 최종 모형은 고의성 여부 판단의 7.4% ~ 9.9%를 설명하였다.

주효과 변인이 투입된 1단계 모형을 확인해 보면, 범죄 심각성(Exp(B) = .927, Wald = .123, p = .726)과 확증편향(Exp(B) = 1.367, Wald = 1.886, p = .170)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범죄사건 전형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Exp(B) = 2.010, Wald = 10.358, p = .001). 즉, 범죄사건의 전형성을 높게 지각한 사람들은(낮게 지각한 사람들보다) 사건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2.010배 더 큰 것이었다(95% CI: 1.314 ~ 3.074).

나아가,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된 2단계 모형을 확인해 보면, 심각성과 전형성 간(Ex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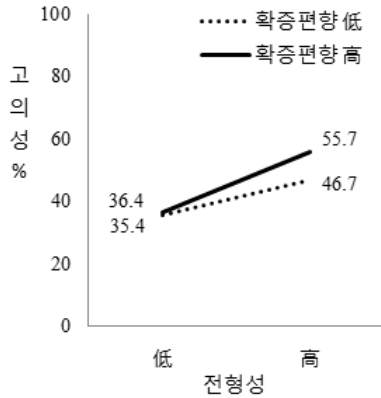


그림 2.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

= 2.892, $Wald = 2.152, p = .142$), 심각성과 확증편향 간($Exp(B) = 1.557, Wald = .491, p = .483$)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Exp(B) = 3.620, Wald = 4.025, p = .045$).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각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2 참고).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는 고의성 정도의 판단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범죄의 전형성이 낮은 사건에서는 확증편향이 높은지 낮은지 고의성 판단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전형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이(낮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더 사건 가해자의 행위를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삼원상호작용효과가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Exp(B) = .170, Wald = 3.751, p = .053$).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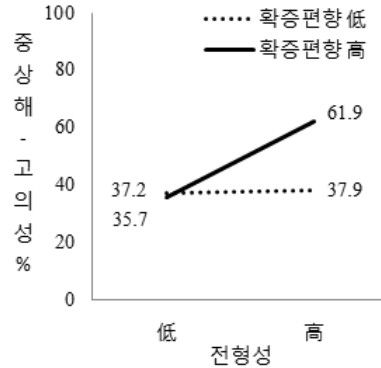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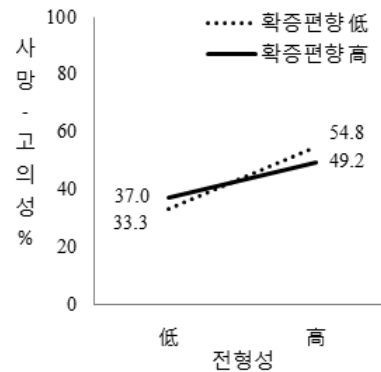


그림 3.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 및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



각성이 낮은 중상해 사건과 심각성이 높은 사망 사건 각각에 대해, 범죄의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각 조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3 참고). 그 결과, 범죄의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는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각성이 낮은 중상해 사건에서는 고의성 정도의 판단 결과와 유사하게, 범죄의 전형성이 높고 확증편향 또한 높은 조건에서 사건 가해자 행위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범죄 심각성이 높은 사망 사건에서는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특별한 상호작용 패

턴이 나타나지 않았고, 확증편향 수준에 상관 없이 전형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에서 사실인정(fact finding)의 핵심 영역이면서(김일수, 서보학, 2008; 김한균, 2010; 사법연수원, 2011; Kneer & Bourgeois-Gironde, 2017; Malle & Nelson, 2003), 사회적 귀인과 판단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최승혁, 허태균, 2020a; Alicke, 2000; Heider, 1958; Knobe, 2003; Malle & Knobe, 1997; Sripada, 2010) 고의성 판단에서 확증편향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특성 모델’(최승혁, 허태균, 2020a; 2020b)에서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는 범죄사건의 전형성과, ‘도덕적 평가 모델’(Alicke, 2000; Knobe, 2003)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범죄사건의 심각성 요인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두 범죄사건 요인들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 과정에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확증편향(김상준, 2013; 김청택, 최인철, 2010; Kassin et al., 2013; Nickerson, 1998)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예상한 바대로, 범죄사건의 심각성은 고의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범죄의 심각성 수준(중상해 대 사망)에 따라 고의성 정도 및 여부에 대한 판

단이 달리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최승혁과 허태균(2020a), Sripada(2012), Sripada & Konrath(2011)의 연구들에서 도덕적 평가 요인(행위자에 대한 비난, 행위결과의 나쁨 정도)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미미했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또한, 최승혁과 허태균(2020b)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사건 당사자들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범죄사건의 전형성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검증되었다. 즉, 사람들은 범죄의 심각성과 상관 없이, 나쁜 사람들이 만나 싸우는 상황을 고정관념적으로 전형적인 폭력적 범죄 상황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범죄 상황에서는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이 보다 그럴듯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Pennington & Hastie, 1986; 1993). 이러한 결과는 고의성 정도뿐만 아니라,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다 중요한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사건의 전형성이 확증편향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정도 및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전형적이지 않은 폭력적 범죄 사건에서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전형적인 폭력적 범죄 상황에서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더 찾는 편향을 보이는데(Wason, 1960), 전형적인 범죄 사건이라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이때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의성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들을 더 찾게 되어, 그에 따라 결국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확증편향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사건의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는 간접적으로 범죄 심각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의성 정도나 여부 판단에 대한 범죄 심각성의 직접적인 주효과가 없었고, 삼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고의성 여부 판단에서 그 영향력 또한 크진 않았지만($Exp(B) = .170$),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사건의 심각성이 낮은 사건에서는, 고의성 정도 및 여부 판단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확증편향이 낮은 사람들도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많이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심각성이 작을 때 보다 클 때 사람들은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는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받아 사건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형사사법 판단 분야에서 만연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확증편향(김상준, 2013; 김청택, 최인철, 2010; Findley & Scott, 2006; Kassin et al., 2013; Kukucka & Kassin, 2014; Nickerson, 1998)이 범죄사건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즉, 사람들은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는데,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사건의 고의성 판단에서도 확증편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넘어, 확증편향의 영향은 범죄사건 전형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범죄사건을 처음 접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수사관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실체적 진실(ground truth)을 밝히기 위한 사실인정의 핵심 영역으로 다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김일수, 서보학, 2008; 김한균, 2010; 사법연수원, 2011; Kneer & Bourgeois-Gironde, 2017; Malle & Nelson, 2003). 그런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 즉 사건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심적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자 본인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이나 재판관은 자신의 가설이나 고정관념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타당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호한 증거들은 배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합리적·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는 도덕적으로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을 전형적인 폭력적 범죄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의성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애매모호한 증거들을 해석하는 확증편향이 작동하여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확증편향을 통해 고의성 판단에 대한 범죄사건 전형성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본 연구결과는 범죄사건 전형성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책이 확증편향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전형성과 확증편향 간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확증편향이 낮은 조건에서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고의성 판단 차이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은 확증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들 (Canter & Youngs, 2009; Dror, 2013; Kassir et al., 2013; Saks et al., 2003; van den Eeden et al., 2019), 즉, 사전 기대나 가설이 자동적으로 확증적 정보를 수집하게 만들고 또한 애매모호한 정보들은 사전 기대에 걸맞은 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등의 확증편향의 영향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설과 반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 노력하며, 여타 법률외적인 정보들은 물론 법률적·사실적 정보들이 사건과 관련한 맥락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건 관련 정보들을 배제한 채 각 증거들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증거의 평가에 있어서 이중맹목 절차(double-blind procedure)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증편향을 감소시키는 노력은 곧 전형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의성 판단을 왜곡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 (2013).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수, 서보학 (2008).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서울: 박영사.
- 김청택, 최인철 (2010). 법정지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uci:G704-002133.2010.51.4.008
- 김한균 (2010). 형법상 모살·고살 구분과 영미형법의 살인죄. 형사법연구, 22(4), 183-209. doi:10.21795/kcla.2010.22.4.183
- 사법연수원 (2011).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경기도: 사법연수원 출판부.
- 최승혁, 허태균 (2020a).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 도덕적 특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1), 25-45. doi:10.20406/kjcs.2020.2.26.1.25
- 최승혁, 허태균 (2020b). 그들이라면...그렇면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55-74. doi:10.21193/kjspp.2020.34.2.004
- Alicke, M. D. (2000). Culpable control and the psychology of blame. *Psychological Bulletin*, 126, 556-574. doi:10.1037//0033-2909.126.4.556
- Alicke, M. D. (2008). Blaming badly.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8, 179-186. doi:10.1163/156770908X289279

- Alicke, M. D., & Rose, D. (2012). Culpable control and causal devianc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10), 723-735. doi:10.1111/j.1751-9004.2012.00459.x
- Canter, D. V., & Youngs, D. (2009). *Investigative psychology: Offender profiling and the analysis of criminal action*. John Wiley & Sons.
- Cova, F., Lantian, A., & Boudesseul, J. (2016). Can the Knobe Effect be explained away? Methodological controversies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ality and mor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10), 1295-1308. doi:10.1177/0146167216656356
- Cushman, F. (2008). Crime and punishment: Distinguishing the roles of causal and intentional analyses in moral judgment. *Cognition*, 108, 353-380. doi:10.1016/j.cognition.2008.03.006.
- Dror, I. E., (2013). Practical solutions to cognitive and human factor challenges in forensic science. *Forensic Science Policy &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4(3-4), 105-113. doi:10.1080/19409044.2014.901437
- Dror, I. E., & Charlton, D., & Peron, A. (2006). Contextual information renders experts vulnerable to making erroneous identification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56, 74-78. doi:10.1016/j.forsciint.2005.10.017
- Dror, I. E., & Hampikian, G. (2011). Subjectivity and bias in forensic DNA mixture interpretation. *Science & Justice*, 51, 204-208. doi:10.1016/j.scijus.2011.08.004
- Findley, K., & Scott, M. (2006). The multiple dimensions of tunnel vision in criminal cases. *Wisconsin Law Review*, 1023, 291-397.
- Guglielmo, S., & Malle, B. F. (2010). Can unintended side effects be intentional? Resolving a controversy over intentionality and mor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1635-1647. doi:10.1177/0146167210386733
- Halverson, A. M., Hallahan, M., Hart, A. J., & Rosenthal, R. (1997). Reducing the biasing effects of judges' nonverbal behavior with simplified jury instru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590-598. doi:10.1037/0021-9010.82.4.590
- Hasel, L. E., & Kassin, S. M. (2009). On the presumption of evidentiary independence: Can confessions corrupt eyewitness identific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0, 122-126. doi:10.1111/j.1467-9280.2008.02262.x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Johnson, M., Bush, J., & Mitchell, K. (1998). Interpersonal reality monitoring: Judging the sources of other people's memories. *Social Cognition*, 16, 199-224. doi:10.1521/soco.1998.16.2.199
- Kassin, S. M., Dror, I. E., & Kukucka, J. (2013). The forensic confirmation bias: Problems, perspectives, and proposed solution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 Cognition*, 2, 42-52. doi:10.1016/j.jarmac.2013.01.001
- Kassin, S. M., Goldstein, C., & Savitsky, K. (2003). Behavioral confirmation in the interrogation room: On the dangers of presuming guilt. *Law and Human Behavior*, 27, 187-203. doi:10.1023/A:1022599230598

- Kneer, M., & Bourgeois-Gironde, S. (2017). Mens rea ascription, expertise and outcome effects: Professional judges surveyed. *Cognition*, 169, 139-146. doi:10.1016/j.cognition.2017.08.008
- Knobe, J. (2003). Intentional action and side effects in ordinary language. *Analysis*, 63, 190-194. doi:10.1111/1467-8284.00419
- Knobe, J. (2010). Person as scientist, person as moralis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4), 315-329. doi:10.1017/s0140525x10000907
- Kukucka, J. & Kassin, S. M. (2014). Do confessions taint perceptions of handwriting evidence?: An empirical test of the forensic confirmation bias. *Law and Human Behavior*, 38(3), 256-270. doi:10.1037/lhb0000066
- Lange, N. D., Thomas, R. P., Dana, J., & Dawes, R. M. (2011). Contextual biases in the interpretation of auditory evidence. *Law and Human Behavior*, 35, 178-187. doi:10.1007/s10979-010-9226-4
- Malle, B. F. & Konbe, J. (1997). The folk concept of intenti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101-121. doi:10.1006/jesp.1996.1314
- Malle, B. F. & Nelson, S. E. (2003). Judging mens rea: The tension between folk concepts and legal concepts of intentionalit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563-580. doi:10.1002/bsl.554
- Monroe, A. E, & Malle, B. F. (2019). People systematically update moral judgments of 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2), 215-236. doi:10.1037/pspa0000137
- Nadelhoffer, T. (2006). Bad acts, blameworthy agents, and intentional actions: Some problems for juror impartiali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9, 203-219. doi:10.1080/13869790600641905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doi:10.1037/1089-2680.2.2.175
- Ngo, L., Kelly, M., Coutlee, C. G., Carter, R. M., Sinnott-Armstrong, W., & Huettel, S. A. (2015). Two distinct moral mechanisms for ascribing and denying intentionality. *Scientific Reports*, 5, 1-11. doi:10.1038/srep17390
- O'Brien, B. (2009). Prime suspect: An examination of factors that aggravate and counteract confirmation bias in criminal investig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5, 315-334. doi:10.1037/a0017881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42-258. doi:10.1037/0022-3514.51.2.242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In R. Hastie (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pp. 192-221).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gers, R., Alicke, M. D., Taylor, S. G., Rose, D., Davis, T. L., & Bloom, D. (2019). Causal deviance and the ascription of intent and blame. *Philosophical Psychology*, 32(3), 404-427. doi: 10.1080/09515089.2018.1564025
- Saks, M. J., Risinger, D. M., Rosenthal, R., & Thompson, W. C. (2003). Context effects in forensic science: A review and application of the science of science to crime laboratory

-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Science & Justice*, 43(2), 77-90.
doi:10.1016/S1355-0306(03)71747-X
- Sripada, C. (2010). The deep self model and asymmetries in folk judgments about intentional action. *Philosophical Studies*, 151, 159-176. doi:10.1007/s11098-009-9423-5
- Sripada, C. (2012). Mental state attributions and the side-effect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232-238.
doi:10.1016/j.jesp.2011.07.008
- Sripada, C. & Konrath, S. (2011).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about intentional action. *Mind & Language*, 26, 353-380.
doi:10.1111/j.1468-0017.2011.01421.x
- van den Eeden, C. A., de Poot, C. J., & van Koppen, P. J. (2019). The forensic confirmation bias: a comparison between experts and novic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64(1), 120-126. doi:10.1111/1556-4029.13817
- Wason, P. C. (1960). On the failure to eliminate hypotheses in a conceptual task.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3), 129-140. doi:10.1080/17470216008416717
- Zucchelli, M. M., Starita, F., Bertini, C., Giusberti, F., & Ciaramelli, E. (2019).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d emotion: The Knobe Effect in alexithymia. *Cognition*, 191, 1-9.
doi.org/10.1016/j.cognition.2019.05.015
-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 논문 투고일 : 2020. 07. 31
1 차 심사일 : 2020. 08. 03
게재 확정일 : 2020. 08. 31

The Effect of confirmation bias on Intentionality Judgment: The Role of Crime Typicality and Seriousness

Seung-Hyuk Choi

Inst.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Kwangwoon Univ.

Confirmation bias is well known to be the cause of widespread misjudgment in the field of forensic decision-making.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y which confirmation bias affects intentionality judgment in serious injury and death cases that combine the mo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petrator and victim differently. As a result, participants perceived the case as a more typical criminal case when both the perpetrator and victim were bad people, and gave higher intention to perpetrators' actions in these typical crim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people with a high degree of confirmation bias highly judge the intention of the offenders in a consistent way with the stereotype of criminal cases. However, in serious criminal cases, the moderate effect of confirmation bias has disappeared and only the effect of crime typicality has existed. Finally, we discusse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ways to reduce bias in intentionality judgment.

Key words : confirmation bias, crime typicality, crime seriousness, moral character, intentionality judgment

부 록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고의성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N = 371)

| | 1 | 2 | 3 | 4 | 5 | 6 | 7 |
|-----------|-------|------------------|-------|---------|-------|----------------|---|
| 1. 성 별 | 1 | | | | | | |
| 2. 연 령 | .000 | 1 | | | | | |
| 3. 범죄 심각성 | -.003 | .013 | 1 | | | | |
| 4. 범죄 전형성 | -.014 | .017 | .018 | 1 | | | |
| 5. 확증 편향 | -.054 | .135** | .005 | .091 | 1 | | |
| 6. 고의성 정도 | .001 | -.135** | .036 | .215*** | .121* | 1 | |
| 7. 고의성 여부 | .017 | -.160** | -.017 | .169** | .061 | .726*** | 1 |
| M(SD) | - | 39.13 (10.72) | - | - | - | 5.43 (2.17) | - |

주. 성별: 0 = 여, 1 = 남; 범죄심각성: 0 = 저, 1 = 고; 범죄전형성: 0 = 저, 1 = 고; 확증편향: 0 = 저, 1 = 고; 고의성여부: 0 = 무, 1 = 유.

* $p < .05$, ** $p < .01$, *** $p < .001$.